##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29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이학영·김성화·박홍근

김교흥 · 김영배 · 한정애

강득구 · 김영진 · 안호영

전재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 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4조 및 제86조).

법률 제 호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을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치료감호시설"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을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치료감호시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통보의무) ① (생 략)	제84조(통보의무) ① (현행과 같		
	<u>수</u>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		
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	소 및 그 지소·치료감호시설-		
<u>치료감호시설</u>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			
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생 략)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	② <u>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u>		
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	소 및 그 지소·치료감호시설-		
<u>치료감호시설</u>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방			
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			
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			
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			
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			
여야 한다.	<u>.</u>		